

소방청 공고 제2018-175호  
(2018.12.31)

제3차( 2019~2023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

2018. 12.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119**

# 목 차

I. 기본계획 개요 .....	1
II.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	4
III. 제2차 기본계획 성과 평가 .....	13
IV. 제3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전략 .....	17
V. 분야별 추진 과제 .....	19
1. 화재위험 기반의 제도 개선 .....	19
2.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	25
3.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29
4. 피해보상 확대 및 보험시스템 고도화 .....	32
VI. 추진 일정 .....	34

# I 기본계획 개요

## 1 수립 배경

- 지난 10년('09~'18년) 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개선에 기여
  -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구조적 측면과 영업형태 측면에서의 복합적 위험요인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대형화재 지속 발생
    - \* 최근 5년간 인명피해(화재 1천건) : 일반 건축물(49명) vs 다중업소(63명) [28.4% ↑]
    - \* '17년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망29, 부상39), '18년 군산 유흥주점 화재(사망3, 부상30), '18년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사망7, 부상11)
- 최근 여가형태와 소비·생활문화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유사한 형태의 신종 업종의 출현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 필요
  - \* (신종업종) 방탈출카페, 실내양궁장, 스크린야구장, 키즈카페 등
  - 더불어, 규제 관리측면에서 다수의 관계부처(9개) 및 법령(12개)으로 인해 정책 및 환경변화에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정과 협력기능 미흡
- 또한, 현재 안전관리 정책 방향이 안전시설, 실내장식물 및 비상구 설치·관리 등 소방시설 및 설비의 설치·관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 영업주 및 종사원의 안전의식 부재, 화재 시 초기대응능력 부족, 평상 시 교육훈련 참여 저조 등 사람 중심의 안전대책 미흡하며,
  -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소급입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노후화된 기존 업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따라서, 제 1·2차 기본계획의 핵심적 정책의 성과는 계승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은 낮추고 인명보호 대책은 강화할 필요
  - 이에,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국정철학에 따라, 향후 5년('19~'23)간의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

## □ 계획의 범위

○ (적용기간) 2019 ~ 2023(5년)

○ (적용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관계법령(12개)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체육시설법, 학원법, 사격장안전법, 건축법, 보험법

○ (관계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 소방청 등 9개 부처

## □ 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 (기본계획)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안전관리 역량 향상, 보험제도 정착을 위해 수립되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 (종합계획)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을 관리·운영하는 중앙부처의 안전정책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 □ 주요 내용(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및 전산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 1차 기본계획

- (적용기간) 2009 ~ 2013(5년)
- (추진방향)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의 개발 및 자율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통한 인적·물적 피해 저감
- (추진과제) 5개 분야, 17개 중점추진과제

## □ 2차 기본계획

- (적용기간) 2014 ~ 2018(5년)
- (추진방향)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및 재난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발생 시 초기에 대응·복구하는 선제적 체계 구축
- (추진과제) 3개 분야, 7대 추진과제, 15개 중점추진과제

## 1·2차 기본계획 개요

구분	비전	목표	추진전략
1차	안전기준 개발 및 자율관리능력 향상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안전관리 촉진</li> <li>■ 화재안전 정보체계 구축관리</li> <li>■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li> <li>■ 교육기술의 연구개발</li> <li>■ 화재위험평가 연구·개발</li> </ul>
2차	안전한 공간 행복의 새 시대	선제적·신속적·체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대비 : 스스로 알아서</li> <li>■ 대응 : 보다 빠르게</li> <li>■ 복구 : 느낄 수 있게</li> </ul>

## II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 □ 다중이용업소 정의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 인·허가 부서가 있는 업종은 19개 업종 167,572개소(93%)이며, 인·허가 부서가 없는 업종(자유신고업)은 고시원, 수면방 등 4개 업종으로 12,806개소(7%)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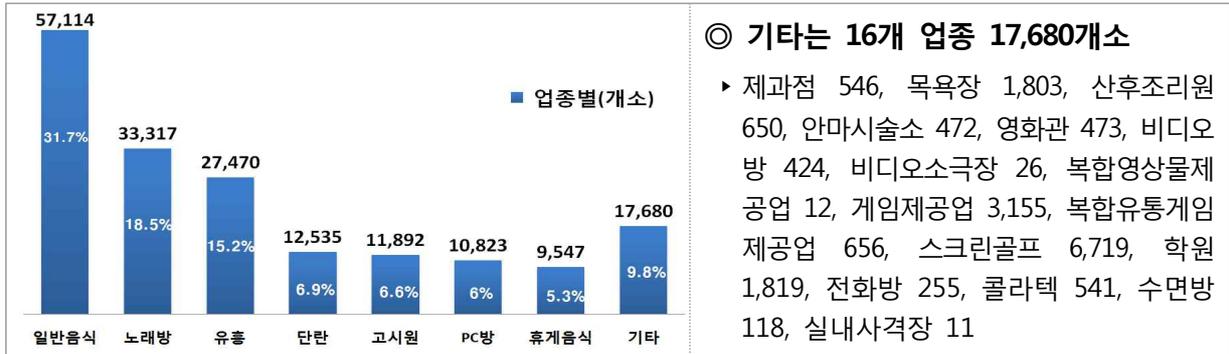
#### <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현황 >

업종	관계법령	소관부처	시·군·구 담당부서
후계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시·군·구 위생과, 보건소
목욕장(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의료법		
영화영상관, 비디오방, 비디오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비디오법	문화부	시·군·구 문화체육(관광)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	게임산업법		
노래연습장	음악산업법		
스크린골프연습장	체육시설법		
학원	학원법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실내사격장	사격장안전법	경찰청	경찰서
고시원	자유업종 (관계법령 없음)	-	사업자 등록
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	사업자 등록

## □ 다중이용업소 현황

## ○ 업종별 현황

-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23개 업종, 180,378개소 관리



## &lt; 2018년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현황 &gt;

('18.1월 통계기준)

종 계	일반음식	노래연습	유흥주점	단란주점	고시원	PC방	휴게음식	기타
180,378	57,114	33,317	27,470	12,535	11,892	10,823	9,547	17,680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 ○ 지역별 현황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49.4%로 절반가량 집중분포



## &lt; 2018년 다중이용업소 지역별 현황 &gt;

종 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경북	경남	충남	강원
180,378	39,445	39,348	13,275	10,286	8,676	8,121	8,024	6,466	6,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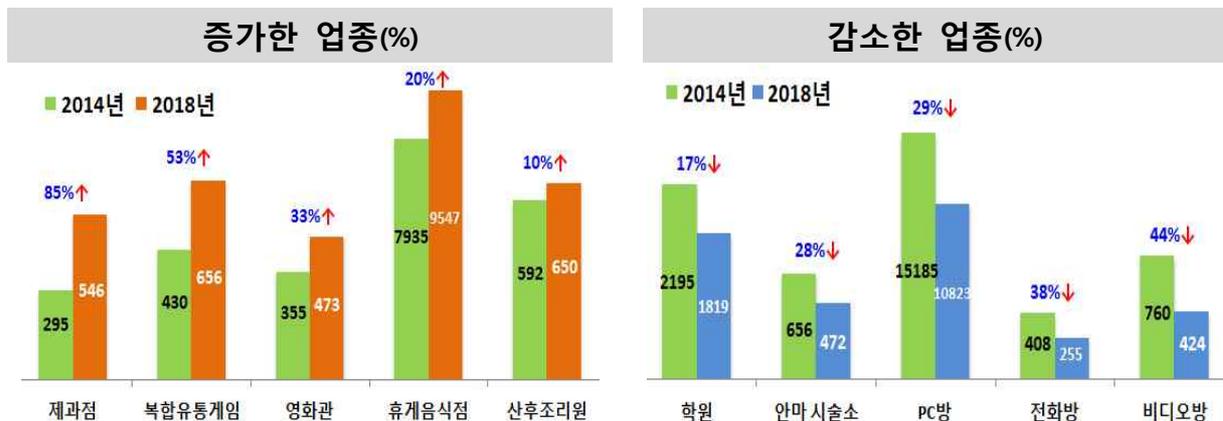
※ 기타 9개 시도 40,715개소 :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북, 전남, 창원, 제주, 세종

## □ 최근 5년간('14~'18년) 다중이용업소 변동 추이

- (증감) '13.11.20. 복합영상물 제공업(일명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 이후, 다중이용업소는 '15년 고점대비 감소추세 (2.9%P↓)에 있음.



- (업종별) 복합유통게임, 영화관, 휴게음식점 등 여가관련 업종은 증가한 반면, 비디오방, 전화방, PC방 등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감소 추이를 보임



### < 최근 5년간 업종별 증감현황 >

( '14년·'18년, 예방소방통계자료 )

구분	계	제과점	복합유통게임	영화관	휴게음식점	산후조리원	학원	안마 시술소	PC방	전화방	비디오방
2014	184,727	295	430	355	7,935	592	2,195	656	15,185	408	760
2018	180,378	546	656	473	9,547	650	1,819	472	10,823	255	424
증감 (%)	-4,349 (-2.4)	261 (85)	226 (53)	118 (33)	1,612 (20)	58 (10)	-376 (-17)	-184 (-28)	-4,362 (-29)	-153 (-38)	-336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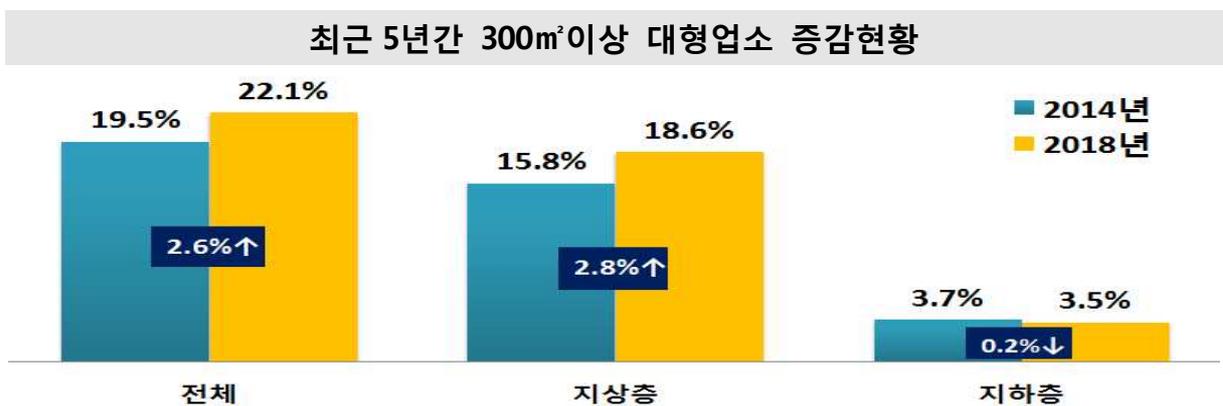
- (자유업종) 인허가 부서가 없는 업종 중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고시원은 '14년 대비 3.8%P 증가했으며,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은 '14년 대비 평균 21.2% 감소 추세



- (업소규모) '18년 다중이용업소의 77.8%가 300㎡미만의 소규모 업소이나, 300㎡이상의 업소\*는 '14년(19.5%) 대비 2.6%P 증가한 22.1%임.

⇒ 대형화·복잡화하고 있어 규모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필요

- 지하층 영업장은 56,290개소(31.2%)로 이 중 300㎡이상의 대형업소는 '14년 6,901개소 대비 556개소 감소한 6,345개소임.
- 다중이용업소의 대형화·복잡화는 지하층보다는 지상층에서 많이 발생



(\*'14년·18년, 예방소방통계자료)

년도	계	150㎡미만	150~300	300~500	500~1,000	1,000~3,000	3,000㎡ 이상
2014	184,727	89,169 (48.3%)	59,479 (32.2%)	20,799 (11.3%)	10,963 (5.9%)	3,633 (2.0%)	684 (0.4%)
2018	180,378	79,438 (44%)	61,028 (33.8%)	23,618 (13.1%)	11,427 (6.3%)	3,940 (2.2%)	927 (0.5%)

### 3

##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

### □ 최근 5년간 화재발생현황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3~'17년)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합 계	215,093	10,679	<b>211,958</b>	<b>10,480</b>	<b>3,135</b>	<b>199</b>
	100%	100%	<b>98.54%</b>	<b>98.14%</b>	<b>1.46%</b>	<b>1.86%</b>
'17년	44,178	2,197	43,571	2,174	607	23
'16년	43,413	2,024	42,621	1,957	792	67
'15년	44,435	2,093	43,884	2,058	551	35
'14년	42,135	2,181	41,549	2,154	586	27
'13년	40,932	2,184	40,333	2,137	599	47

- 5년간 누적 화재건수는 3,135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199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1.86%임.
- 화재건수 비율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일반건축물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입증
  - \* 최근 5년간 인명피해(화재 1천건) : 일반 건축물(49명) vs 다중업소(63명) [28.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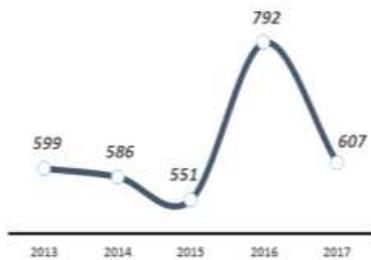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률

구 분	현 황	화재건수	화재발생률	인명피해
연평균	184,123	627	0.34%	40
'17년	179,505	607	0.34%	23
'16년	179,088	792	0.44%	67
'15년	185,919	551	0.30%	35
'14년	184,727	586	0.32%	27
'13년	191,378	599	0.31%	47

- (화재/인명피해) 연평균 화재건수 627건/ 인명피해 40명(사망 3, 부상 37)
  - 다중이용업소 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화재 발생율은 연평균 0.34%로 나타났으며, 대형화재도 빈번하게 발생\*
  - \* '18.6월 전북 군산 노래주점 화재, '18.9월 경북 청도 용암웰빙스파 화재

○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인명·재산 피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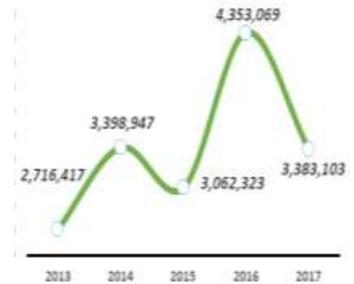
연도별 화재건수[건]



연도별 인명피해[명]



연도별 재산피해[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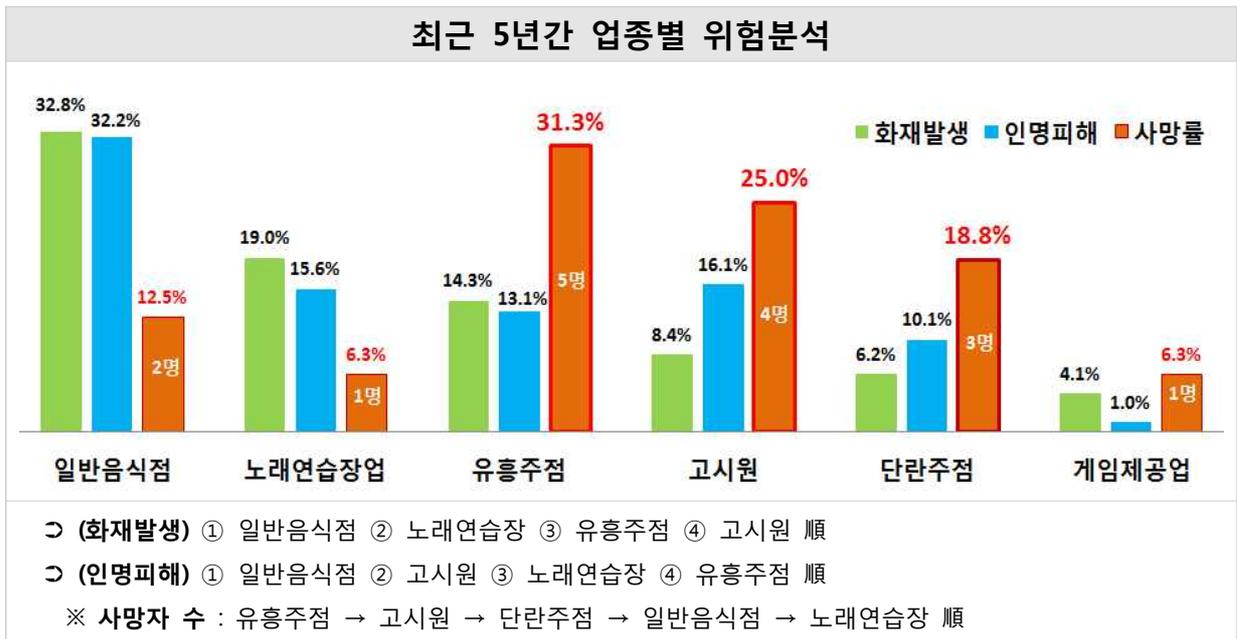
○ 업종별 화재현황 및 위험분석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업종 수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유흥주점, 고시원, 단란주점 順으로 나타남

\* 5년간 사망 16명 중 12명(75%) 차지 ⇒ 유흥주점(5), 고시원(4), 단란주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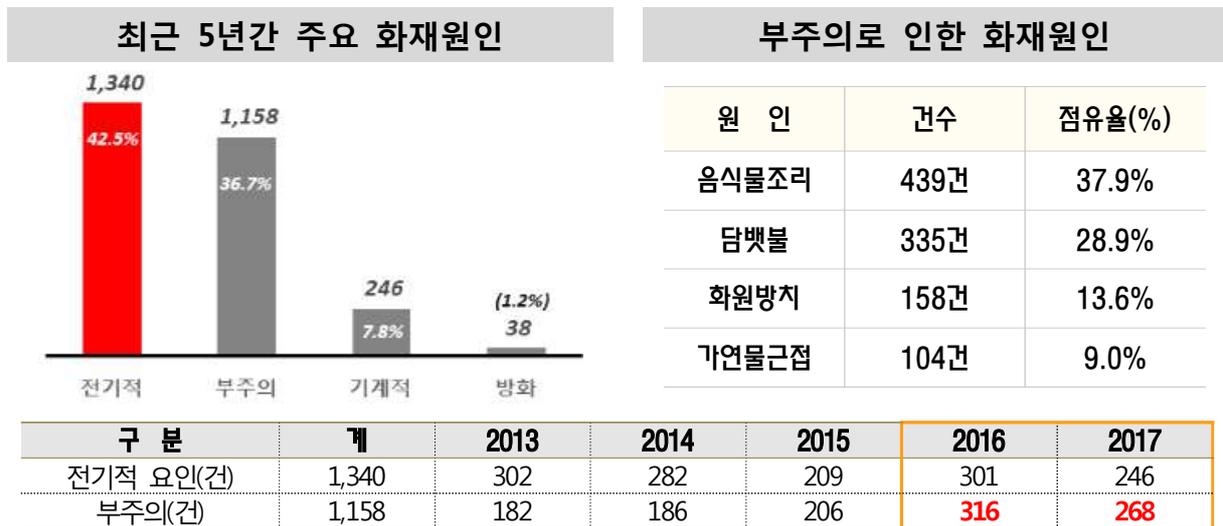
\*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망자 7명 포함 시 고시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음

- 이러한 원인은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한 피난장애와 피난약자를 유발시키는 서비스(음주, 취침, 가무)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많이 발생



⇒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특성에 따른 안전기준 차별화 필요**

- (원인별 분석) 주요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2.5%)이 다수 차지
  - 최근 5년간 화재는 전기 및 기계적 요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원인 중 87.5% 차지 \* 원인별 : ① 전기 ② 부주의 ③ 기계적 順
  - 그러나 '16년을 기점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기적 요인을 앞질러 증가추세를 보이며, 향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부주의(1,158건) 화재 중 음식물조리, 담뱃불, 화원방치가 80.5%(932건)로 다수 차지, 부주의 화재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 필요

**< 최근 5년간 부주의 화재현황 >**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3~'17년)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b>계</b>	<b>1,158</b>	<b>182</b>	<b>186</b>	<b>206</b>	<b>316</b>	<b>268</b>
음식물조리	439	72	63	86	120	98
담뱃불	335	56	62	54	94	69
화원방치*	158	27	22	24	40	45
가연물근접**	104	15	19	18	26	26
불장난	9	1	0	1	3	4
기타	113	11	20	23	33	26

\* 화원방치 : 양초, 숯불, 불씨, 불꽃 등 화재 발생원인 방치

\*\* 가연물근접 : 석유난로 위에 빨래건조, 주방화로 주변 가연물 방치 등

## □ 정치적 환경(Politics)

-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 지대

\* 국정과제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100대 국정과제

-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점차 확대·강화되고, 안전취약계층 등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

\* 헌법에 안전권 반영 추진, 국정과제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포함

-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과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 저조

\*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OECD 34개 국가 중 25위, '16년)

\*\* '안전하지 않다' 응답률(%), <sup>7)</sup>안전처 조사) : '15.12 35.5 → '16.10 40.4 → '16.12 57

⇒ 실질적 화재피해자 구호 및 안전규제 정비 필요

## □ 경제적 환경(Economics)

- 소비자 심리지수\* 및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등의 하락에 따른 다중이용업주의 경제적 부담 증가

\* 101('18.7.) → 99('18.8.) → 100('18.9.) → 99('18.10.) → 96('18.11.)

- 경제 성장세 및 자영업 고용률이 둔화\*되어 나홀로 영업장 증가

\* 종업원 없는 영업주 단독 사업장('16년, 통계청 조사) : 전체의 82%

⇒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안전시설 강화 필요

\* 제천복합건물 화재 당시 2층 여자 목욕탕 피난안내 직원 없어 20명 사망

## □ 사회적 환경(Society)

### ○ '주 52시간'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여가시간 증가

※ 2016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경우 50.6%가 여가시간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

\* '18년 근로기준법 개정 : 1주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 → 52시간)

### ○ 폭염 등 이상기후로 야외활동 여건이 악화되어 야외활동보다는 영화 관람 등 실내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올 여름철(6.1~8.16.) 전국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은 각 25.5℃, 30.7℃로 평년(23.5℃, 28.3℃)에 비해 2.0℃, 2.4℃높아 197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음

※ 폭염일수는 현재 한반도 전체평균 7.5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지게 되면 21세기 후반에 31.9일로 한 달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 (여가공간 순위) 식당 > ... > 커피숍 > 대형마트 > ... > 영화관 > ... > 목욕탕 순

### ○ '17.12월 제천 대형화재 이후 국민 화재안전 불안감\* 고조

\* '불안하다' 응답률(%), 제천시 조사) : 화재 73.6, 교통 66.6, 범죄 63.2, 지진 50

### ○ 국민적 관심을 끄는 대형화재의 빈발

※ 전북 군산 노래주점 화재, 경북 청도 용암웰빙스파 화재, 서울 국일고시원 화재 등

⇒ **업소규모, 특성에 따른 안전시설기준 마련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필요**

## □ 기술적 환경(Technology)

### ○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테마파크, 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양궁장 등 기술발전에 따른 신종 유사다중이용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 발생

⇒ **신종 업종 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기법 개발 필요**

### III

## 제2차('14~'18년) 기본계획 성과 평가

### 1

#### 제2차 기본계획 추진개요

##### □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특징

- 다중이용업소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 신속적, 체감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여 수립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및 재난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발생시 초기에 대응·복구하는 선제적 체계를 구축하도록 기본방향 설정
- 기본구성은 6대 과제에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7개 전략 (예방-대비-대응-복구)으로 15개 세부과제를 선정

##### □ 제1·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및 비교

1차('09~'13년) 기본계획 (총 17개 과제)	2차('14~'18년) 기본계획 (총 15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제도 개선</li> <li>■ 법령위반업소 공개 및 경제제재</li> <li>■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전파</li> <li>■ 안전관리 경진대회 실시</li> <li>■ 화재조사 자료 D/B시스템 구축</li> <li>■ 안전정보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li> <li>■ 규제효과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li> <li>■ 안전관련 법령 적합성 확보</li> <li>■ 신종 다중업소 정보수집</li> <li>■ 교육매체·방법 다양화</li> <li>■ 전용 안전시설 개발 촉진</li> <li>■ 교수요원 자질 및 교수기법 향상</li> <li>■ 화재위험평가 연구개발</li> <li>■ 화재위험 유발지수 개발연구</li> <li>■ 전용시뮬레이션 개발</li> <li>■ 화재위험평가 개발 및 인력확대</li> <li>■ QM기반의 안전관리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의식 강화 기반 구축</li> <li>■ 관련부처별 협업체계 가동</li> <li>■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li> <li>■ 다중이용업소 안전지도 작성</li> <li>■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역량제고</li> <li>■ 안전관리 지수(Index) 개발</li> <li>■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화</li> <li>■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체계 구축</li> <li>■ 화재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성 강화</li> <li>■ 초기대응체계 구축</li> <li>■ 신속대응훈련 추진</li> <li>■ 과학적 화재저감정책 개발</li> <li>■ 화재피해복구 종합지원체계 구축</li> <li>■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성능개선</li> <li>■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정비</li> </ul>

## □ 위험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준 개선

- 반복적 대형화재 사고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화재원인 조사 결과를 소방정책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추진
  - 비상구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였고, 기존업소에도 2년이내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소급적용('17.12.26.시행)
  - 노래방 등 밀폐구조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염·연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구획시 불연재료 사용('15.1.8.시행)
  - 음식점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K급)를 개발하여 음식점 주방에 설치하도록 의무화('17.6.12.시행)
  - 복도 및 통로가 있는 모든 영업장에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통로너비를 120cm이상 설치의무('18.7.10.시행)
  - 다중이용업소 금연공간 지정 확대\*로 담뱃불에 의한 화재예방 일조
    - \* 금연공간 확대(스크린골프장)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 '17.12.3)

## □ 정기(2년마다) 소방안전교육 신설 등 자율안전관리 강화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해 주기적으로(2년) 소방안전교육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틀 마련('16.1.21.시행)
  - 교육 접근성 확대(모바일 서비스 제공), 다수의 교육접수자 관리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버교육센터 개편\*
    - \* '15~'16년도 학습만족도 설문조사 “만족” 98%↑로 긍정적 효과(소방안전원)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확대\* 및 고질적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를 통한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계기 토대 마련(연중추진)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이용하기’ 및 ‘비상구는 생명의 문’ 안전문화 확산운동 전개
    -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확대(3.7배) : '12년 336개소 → '18년 1,245개소

## □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공유체계 구축

- 관계부처의 허가관련\* 정보(신규, 변경허가)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출되도록 시스템 연계·구축('14~'15년)

\* 시·도 허가관청(서울행정시스템), 교육청(나이스), 손해보험협회(보험 전산망)

## □ 표준매뉴얼 개발 등 소방안전관리 역량 강화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개발 제작보급(매년)  
\* 화재현황 및 추이, 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지켜야할 의무, 화재시 행동요령 등
- 외국인에 적합한 피난안내도 표준매뉴얼 개발·보급('18.7월)
- 영화관, 백화점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대규모 인명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마련('16.2월)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내실화하기 위해 대표적 기업과의 협력 강화('17.3월 <sup>㉠</sup> 안전처 / 영화관 등 12개 기업 협약체결)
- 화재위험평가 시범실시\*를 통한 매뉴얼 문제점 및 신종 유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15.10월 화재위험평가 시범실시(표본 114개소) : 13(A등급), 71(B등급), 30(C등급)

## □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

- 안정과 신뢰받는 보험제도 정착을 위해 손해보험협회(12개 손해보험사) 보험전산망과 소방청 안전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연계구축('14~'15년)
  - 업소 기본정보(소방관서) → 보험전산망(보험사) → 가입확인(소방관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성공적 안착 : 가입률 99.9% ('18.1월, 예방통계자료)
- 획일적 보험료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보험 할인·할증 제도 도입('18.7.10.시행)
- 각종 의무보험에서 제외된 음식점 등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19종)\*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여 사회안전 보장망 확대('17년)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장례식장, 경륜장 등

### □ 소방안전교육 교육전문기관 위탁추진 한계

- 전문교육 내실화를 위한 소방전문교육기관 위탁은 업주 및 직능 단체의 교육비용 발생에 따른 반발로 추진 한계
  - 이론(사이버) 위주의 형식적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고, 영업주 및 종사자 관심을 유도하기에 역부족

### □ 신종 유사 다중이용업 선제적 관리체계 미흡

- 신종 유사 다중이용업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규정 미비
  - 화재위험평가 평가기준(고시 제정)과 매뉴얼 작성 및 업종별 화재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 분류 체계 미흡
- 신종업소 선정 및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위원회’는 소관부처 지정 한계에 따른 성과 미흡

### □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대국민 공개 시스템 미흡

-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부족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한 영업장 이용 보장에 한계
  -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선택권에 제약
-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제공을 위한 안전지도(Fire Map) 개발 부진

###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장 사각지대 발생

- 現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과실 책임주의로 운영되고 있어 방화 등 원인 미상의 화재로 피해를 본 국민에 구제방안 미비
  - \* ‘18.6월 군산 유흥주점 화재 : 방화로 보험 배상불가(사망3, 중상17, 경상13)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타법령의 책임보험 보험금보다 낮게 책정되어 형평성 문제

## IV

# 제3차('19~'23년)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전략체계

## 1

### 추진 방향

#### □ 비 전

- 안전사회 구축 및 국정전략 실현을 위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설정

❖ 국정전략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

\*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 정책목표

-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마련 \*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 설정

#### □ 추진전략

- (화재위험 기반의 제도개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요인에 근거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
- (안전관리 역량강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확산, 체험기반 교육 활성화 및 초기대응역량 강화 등 추진
- (스마트 안전관리) ICT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관리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정보 공유 활성화
- (사회적 보호강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체계 개편 및 보험전산망 고도화를 통한 사회적 보호 기반 확충



## V 분야별 추진과제

### 전략 1 화재위험 기반의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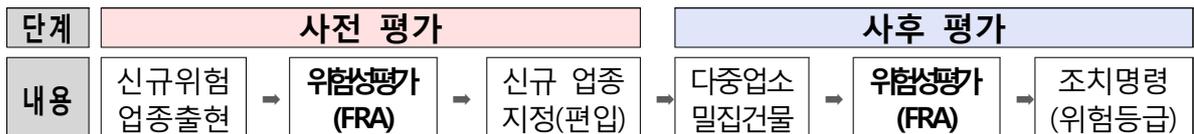
#### 1-1. 신종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제도 도입

##### □ 추진 배경

- 현행 다중이용업 지정방식은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 다중이용업소로 신규 지정\*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 \* 실내사격장은 '09년 부산에서 화재사고 이후 1년 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09.11.14 화재사고 → '10.8.11.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 → '10.11.12 시행)

##### □ 추진 방향

- 현재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후평가 방식에서 신규 업종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도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면적별·수용인원 등을 고려, 사전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비상구의 크기·개수, S/P설비 등 안전시설 탄력적 적용 ※ 획일적 → 인명안전 중심
- 키즈카페 등 신종 유사다중이용업소의 다중이용업소법 편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화재위험평가지표 및 매뉴얼 마련(연구용역 및 법제화)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위험유발지수로 계산하고, 5등급으로 위험등급 평가(ⒶⒷ저위험군→ⓒⓓ중위험군→ⓔ고위험군)
  - \* 이용자의 특성(어린이, 노인 등 피난약자 등), 서비스의 특성(주류취급, 화기취급, 수면제공, 가무제공 등), 공간적 특성(밀폐구조, 지하층 여부 등)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 사전 위험성평가 업무를 전담할 '다중이용업소 안전인증센터\*' 설치 추진
  - \*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홍보, 안전컨설팅 등 수행

## 1-2.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능 강화

### □ 추진 배경

- 다중이용업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인해 여전히 화재안전 위협요인 존재 ⇨ 지속적 인명피해 발생

\* 스프링클러설비 미비, 복잡한 미로구조, 좁은 통로, 관리자의 안일한 화재예방, 겨울철 무분별한 난방기구 사용 등

#### < 국일고시원 화재개요 >

- 일시/장소 : '18. 11. 9(금) 05:00 /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3/1층)
- 인명피해 : 18명 (사망 7, 부상 11) \* 원인 : 301호 전열기 발화 추정

### □ 추진 방향



- ① 화재발생 사전 차단
- ② 화재발생 조기 인지
- ③ 자동소화장치를 활용하여 화재 확산 방지 및 대피시간 확보
- ④ 화재건물 대피

#### ① 화재발생 사전 차단

- 겨울철 전기 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규정 활용방안 추진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사용제한 규정 활용방안 마련(소방기본법 시행령)

#### ② 화재발생 조기 인지

-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 거주시설 조기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 화재감지가 빠르고 발생위치 확인이 가능한 아날로그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설치대상 확대(화재안전기준)

### ③ 자동소화장치 활용

- 기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 병행 추진
  - ┌ (소급적용) 2009.7.8. 이전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간이 SP설치 의무화(法律)
  - └ (지원사업) 국가:지방:민간 1:1:1 매칭사업, 사업기간은 2년
- 사람중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 개선
  - 現 사양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이용자 특성, 위험물 취급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설비(S/P) 등 설치하도록 개선(소방시설법)

### ④ 비상 대피로 확보

- 피난계단 설치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 영업제한 제도 도입 추진
  -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지 않은(양방향 피난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 건축물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기준 강화(영업제한)
  -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양방향 피난이 확보되지 않은 구조의 영업장에는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철계단 또는 철제사다리 설치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시 외부상황 확인 및 탈출이 용이하도록 구획된 각 실마다 창문설치 \* 숙박업의 경우 실마다 창문 및 피난기구 설치(공중위생법)
- 숙박업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장소,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및 일정 이상의 층에는 고시원 영업제한 등으로 화재안전 및 피난안전 강화
  - ※ 산후조리원(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경우 1층에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2층 이상 설치 가능

### ⑤ 기타 안전관리 역량강화

- 지속적인 화재안전특별조사로 건물구조·이용자 특성에 맞는 피난 시설 설치·교육 등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화재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고시원 등 자유신고업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관부처 지정을 추진하고, 인·허가제 전환으로 관리·감독 강화

### 1-3. 화재위험요인 기반의 안전시설 기준 강화

#### □ 추진 배경

- '17년 12월 발생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당시 비상구 통로에 적치된 선반으로 인해 비상구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다수의 사망자 발생
- 청와대에 관련 부처, 안전관련 공공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참여 「화재안전대책특별TF」 구성하여 부처별 개선방안 모색

#### □ 추진 방향

##### ① 비상구 확보 등 의무이행 강화

- 비상구 폐쇄 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위 상향조정을 통한 관계인 안전의식 향상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전성 강화

위반행위	현행	개정
비상구 폐쇄·잠금	3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건적치, 훼손 변경 등	300만원 이하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시설 등의 고질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향

\* (현행) 1천만원 → (개정) 2천만원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활동(불시단속등) 및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등 특수시책 집중 발굴·추진



비상구 물건적치



장애물 적치



비상구 잠금

## ② 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 ○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기준 개선

- 영화상영관에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물을 수화언어 등으로 표현하여 청각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

현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안내영상물</li> <li>- 장애인 수화언어 등 상영기준 없음</li> <li>- 위반시 벌칙 규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개선</li> <li>- 수화언어·폐쇄자막 등 상영기준 마련</li> <li>-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li> </ul>

### ○ 피난약자를 고려한 맞춤형 피난도움 장치 개발·보급

- 국내·외 현황조사하고, 재난환경 및 업종별 피난약자 피난특성 시뮬레이션 연구·시제품 개발·보급 ※ 소방과학연구실 R&D연구('19년 예산 12억원)

\* ('19년) 기획연구 착수 → ('20년) 시제품개발·평가 → ('21년) 설치기준 도입



[사진] 해외 적용사례 / 피난도움 장치의 이해돕기 위한 예시로 특정제품과 무관

## ③ 건축물 화재안전기능 개선

-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필로티 천정과 필로티 벽체에 사용되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필로티 상부 1개층의 마감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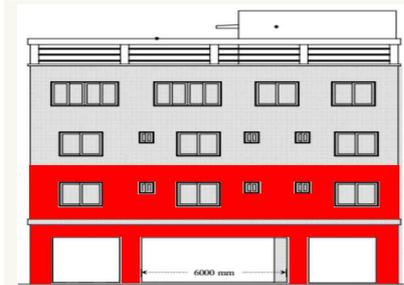
\* (현행) 규정없음 → (변경)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모든 건축물

- 재실자의 양방향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간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재실자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마련

\* 이격거리 :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

\*\* 진입창 : 2층이상 창문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창폭 90cm, 식별표지 부착)

- 건축물 1층과 2층 층간 방화구획 의무화 및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제한으로 화염 및 연기확산 경로 차단
- 화재위험성이 높은 LED조명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전기용품 고시), 간판시설을 방염·난연 처리 의무화(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그림] 필로티건물 준불연재 사용



[사진] 소방관 진입창



[사진] 일체형 셔터 사용제한

#### ④ 전기설비 체계적 안전관리

-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기 대상 확대\* 등 생활 속 안전 강화
  - \* (현행) 3개 품목(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 (개선) 전기화재 위험이 높은 품목 추가(전기매트, 선풍기, 모발건조기 등)
-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노후정도, 관리상태 등)를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산자부)
  - (A등급) 양호, (B)C등급) 단계적 개선, (D)E등급) 개선명령 및 즉시개선
  - \* '17년 전기화재 중 환경적 요소(노후도, 사용 상태 등)로 3,644건(45.5%) 발생
- 전기안전 등급제 대상을 화재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까지 단계적\* 확대 \*전통시장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 공동주택 등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세부내용(안)>

<구분> 점검기준	<현행> 설치기준	<개선>			
		설치기준 + 전기화재 관련 환경적 요소			
점검등급	적합  부적합	A등급	양호	- 법정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	정보 공개
		B등급	단계적 개선	- 계획에 따라 단계적 개선	
		C등급		- 개선명령을 통한 시설개선	
		D등급	즉시 개선		
		E등급	개선		

## 2-1. 다중이용업 관계인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

### □ 추진배경

- 현재 법령은 교육의무이수대상을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1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의 화재대응역량 미흡
- 또한 사이버교육의 경우 일정시간 이수만 하면 이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대리교육 등 형식적 교육으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안전불감증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전문교사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필요

### □ 추진방향

#### ① 다중이용업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 (단기과제 - 사이버교육 평가제 도입) 현행 사이버교육은 일정시간 이수만 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관계인의 실질적 참여여부를 알 수 없으나, 향후 평가제를 도입하여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사람에 한하여 이수증 발급하여 사이버교육의 효용성 제고
- (단기과제 - 표준 교재 및 커리큘럼 보급) 체험위주의 커리큘럼 및 표준 교육교재를 제작·보급하여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질 향상
- (단기과제 - 의무교육대상 확대) 현재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중 1인만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개선
- (중기과제 - 정보통신기술 활용) 가상현실기술을 활용한 현실감 있는 교육환경 제공으로 교육효과 제고



[사진] 화재상황 대처 VR



[사진] 화재상황 대처 VR



[사진] 소화기 사용 VR시스템

- (장기과제 - 전문교육기관 위탁) 사이버 및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체험·실습위주의 교육 실시  
 ⇨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일정 교육비를 납부하고 소방안전원에서 교육 이수

## ②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확대

- (조기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사를 유·초·중·고등학교에 의무 배치하여 피난방법 및 소화기구 사용법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

⇨ 안전문화 내재화 \* 교육기본법(교육부) 또는 소방기본법(소방청) 개정

※ 스웨덴의 경우 대학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매년 20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 현재의 소방안전 교육시설로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교육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대국민 소방안전 교육에는 한계, 소방안전교육 체험장 확대 추진

┌ 전국 소방안전체험관 6개소, 이동안전체험차량 38대 운영

└ (소방서 소방체험교실) 전국 66개 소방서에 전용교육공간 조성('17.12월말 기준)



[사진] 업종별 안전교육



[사진] 화재진압훈련



[사진] 피난대피훈련

## 2-2. 소방관서 대응능력 강화

### □ 추진배경

- 제천화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사다리차는 최소 회전반경이 7m가 필요한 대형차로 고소작업차보다 작동준비 시간이 더 소요되어 민간 고소작업차가 먼저 요구자를 구조함
- 또한 건물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굴절차 등 대형소방차량 진입장애 및 차량배치 공간부족으로 구조활동 시간 지연

### □ 추진방향

#### ①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사다리차 개발·보급

- 現 소방사다리차는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다양한 기능 때문에 대형화되어 상대적으로 기동성 떨어지고 협소한 공간에서는 활동제한
  - \* '17.12.21.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시 민간소유 소형 사다리차 인명(3명) 구조
- 기존 사다리차 대비 크기를 대폭 줄인 소형(3.5톤급) 사다리차 개발·보급

구분(제원)	현 재	개선방안
고층형(50m이상)	인명구조 + 화재진압	현재와 동일
<b>저층형(30m이하)</b>	인명구조 + 화재진압	<b>인명구조 중심</b>
<고층형 사다리차>		<저층형 사다리차>
		

#### ② 골든타임 준수를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 소방자동차 우선 신호 교통시스템 도입(국토부/경찰청/지자체)
  - 출동 시 소방차 우선 통행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추진 및 소방차 출동시 소방관서에서 신호조작이 가능한 신호제어시스템 확대

-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구역 지정확대

		舊 도로교통법		新 도로교통법	
		구분	대 상	구분	대 상
범위 확대	주차 금지	▶ 소화전 등 소방용품		주·정차 금지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 소방시설(송수구 등)
신규 지정		< 신 설 >		주차 금지	▶ <b>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있는 건물 주변</b> ※소방본부장 요청 경찰청장 지정

### 2-3. 안전문화 확산

#### □ 최신 트렌드 활용 및 맞춤형 소방홍보

- 시리즈 웹툰, 연예인 홍보대사, 이모티콘 제작 등 안전문화 확산 극대화
  - \* 사례) 화재안전특별조사 안전왕 웹툰, KTV 슈퍼소방관 등 다양한 소방홍보 추진
- 콜라텍(노년), PC방·코인노래방(청년) 등 업종별 맞춤 콘텐츠 제작·활용
- 겨울철 화재위험 3대 난방용품\* 등 안전사용 캠페인 전개
  - \* (최근 5년 화재) ① 히터·장판(1,525건), ② 화목보일러(1,266건), ③ 열선(1,209건)



[그림] 정책여론수렴 활용



[사진] 연예인 홍보대사



[사진] 영상콘텐츠 제작

#### □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중앙) 범부처 차원의 연계 홍보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
- (지방)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단속활동 강화(비상구 불시단속 등) 및 지역별 맞춤형 홍보·안전문화운동 전개

### 3-1.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고도화

□ 추진배경

-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스마트 환경 조성으로 소방민원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 소방행정 지식축적과 공동활용을 위한 지식정보시스템(통합포털 등) 구축 및 소방정보시스템 사용편의성·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필요

□ 추진방향

① 특정소방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 정보연계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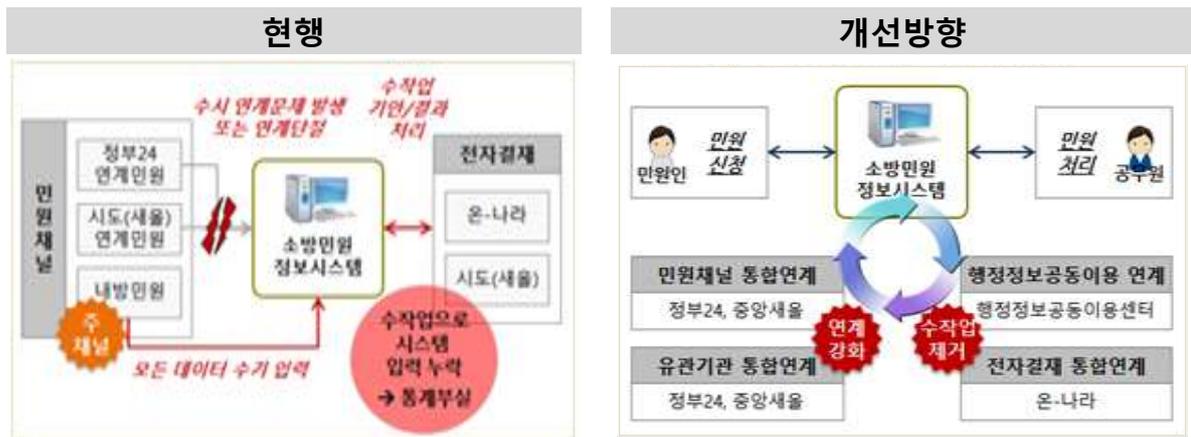
- 특정소방대상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정보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정보를 연계하고, 소방예방활동(안전관리자, 소방시설현황 등) 및 출동현장에 활용도가 높은 정보(건축물구조, 도면 등) 확보



② 소방민원포털 확대구축

- (현행)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은 민원 등록/처리, 기안/결재 등이 다수 수작업 업무를 유발하고 있어 시스템 입력누락 등으로 통계부실 우려

- (확대) ① 민원등록/처리, 기안/결재의 수작업 업무를 시스템 기반의 자동화 기능으로 구축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표준연계 방안을 개발하여 대국민 민원처리 간소화
- ② 통계/조회 중심의 중앙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민원업무 처리중심의 시도 소방민원정보시스템과 통합하고 통계 및 분석 기능 강화



### 3-2. 대국민 화재안전 정보제공 확대

#### □ 추진배경

- 제도적인 규제강화와 더불어 영업주 스스로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자율안전관리문화 정착 필요
- 영업소의 안전정보 및 안전등급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안전한 영업소를 스스로가 선택하게 하고, 그 결과 영업주 스스로 안전시설 보강 등 자율안전관리 유도

#### □ 추진방향

##### ①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 영업주의 자율안전관리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안전선택권 보장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추진
  - 화재안전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안전성능 보강 유도

## ② 안전관리우수업소 및 법령위반업소 정보공개

-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와 연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방안 확보로 지속적인 안전투자 확대 유도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개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발굴 및 다각적 홍보
    - ※ (공개내용) 업소 상호, 주소, 안전시설 현황, 위반내용, 조치한 내용 등

## ③ 화재위험평가결과 공개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실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다중이용업소 안전지도를 개발·공개하고, 영업장에 위험등급표 부착을 의무화하여 자율안전관리 유도
  - \* (A등급) 매우우수 (B등급) 우수 (C등급) 보통 (D등급) 취약 (E등급) 매우취약

## ④ 대국민용 국가화재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 PC, 태블릿 PC, 휴대폰에서 이용 가능한 화재분석프로그램 개발
  - 관계인이 쉽고 빠르게 화재 통계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국민용 화재위험지도(화재안전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전국, 시·도(17개), 시·군·구(226개), 소방서별 화재·행정정보에 대한 그래픽 지도 및 차트 등 다양한 정보를 이미지화 제공



※ 시·도별 화재·행정정보에 대한 그래픽 지도 및 차트 등 다양한 정보를 이미지화 제공

### 4-1.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체계 개편

□ **추진배경**

- 2012년 2월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화재 피해자 구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 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방화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운영상 드러난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타 보험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① **무과실 책임주의 보상원칙으로 전환**

- 방화 및 원인미상 등의 화재사고에 대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보험 보상원칙 전환(“과실→무과실”책임주의)
  - ※ (무과실책임주의 입법례) 재난관리기본법, 화재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법, 광업법 등
  - \* 미보상 사례 : ‘18.6.18. 군산 유흥주점 방화, 인명피해 33명(사망 3, 중상 17, 경상 13)
-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로 화재시 피해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자본기반 마련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보상 현황 >**

(손해보험협회 제공 / ‘13년~17.7월)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7.
건수	4	15	17	10	8
미지급사유	방화, 화재원인 미상 등 영업주 무과실				

② **책임보험 보험금 상향조정**

- 화재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를 상향
  - ※ (사망) 1억 → 1.5억, (부상) 2천만 → 3천만, (대물) 1억 → 10억

## 4-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고도화

### □ 추진배경

- 보험사는 보험정보 보안강화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은 변경된 보험사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능 부재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일일이 소방서에 방문 또는 문의하여 일련번호(MU코드)를 발급받은 후 보험에 가입하는 현 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ICT)의 디지털 생태계와 부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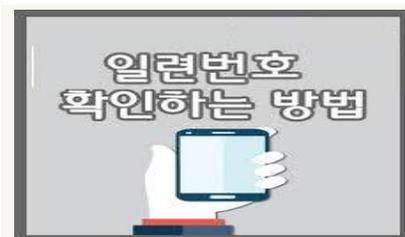
### □ 추진방향

#### ①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테스트 서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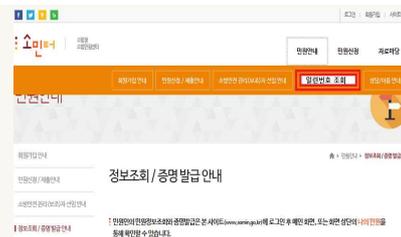
- 소방청의 책임보험전산망은 운영·테스트서버를 분리하지 않고 운영 서버만으로 운영돼 보험회사의 시스템 변경\* 시 테스트 불가능  
 ⇨ 책임보험전산망 업무 테스트 환경 필요\*\*  
 \* 새로운 시스템 도입(5~10년 주기), 시스템 점검(수시), 프로그램 수정(수시)  
 \*\* (현재) 전산망 운영서버 → (개선) 전산망 운영서버 + 테스트 서버
- 보험사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오류 예방 및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사전 예방 가능

####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일련번호(MU(Multiplex) 코드) 조회 시스템 개발

- 현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에서 일련번호(MU코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하나,
- 다중이용업주 누구나 쉽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 조회 시스템을 개발(앱, 포탈, 홈페이지 등)·보급  
 \* (영업주) 보험가입, (보험사) 보험설계, (공무원) 가입독려 → 쉽게 일련번호 조회



[그림] 휴대폰 앱



[그림] 민원포탈



[그림] 홈페이지

## VI 추진 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19	'20	'21	'22	'23	
<b>1. 화재위험 기반의 제도 개선</b>						
1-1.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제도 도입						
① 화재위험평가지표 및 매뉴얼 마련						소방청
②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위원회 신설						소방청/국조실
③ 다중이용업소 안전인증센터 설치 추진						소방청/행안부, 기재부
1-2.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 강화						
④ 고시원, 산후조리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소방청/국토부, 복지부/기재부
⑤ 기존 업소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소방청
⑥ 모든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추진						소방청
⑦ 자유 신고업종 인허가제 전환 등 관리감독 강화						소방청
1-3. 화재위험요인 기반의 안전시설 기준 강화						
⑧ 비상구 확보 등 의무이행 강화						소방청
⑨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기준 개선						소방청
⑩ 피난약자 맞춤형 피난도움 장치 개발						소방청
⑪ 건축물 화재안전기능 개선						국토부/산자부
⑫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추진						산자부
<b>2.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b>						
2-1. 다중이용업 관계인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						
① 다중이용업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소방청/문체부
②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확대						소방청

추진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19	'20	'21	'22	'23	
2-2. 소방관서 대응능력 강화						
③ 기동성이 뛰어난 소형 사다리차 개발·보급						소방청
④ 골든타임 준수를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청/경찰청
2-3. 안전문화 확산						
⑤ 최신 트렌드 활용 및 맞춤형 소방홍보						소방청
⑥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관련부처
<b>3.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b>						
3-1.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고도화						
①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재구축						소방청
② 통합민원포탈 사이트 구축						소방청
3-2. 대국민 화재안전 정보제공 확대						
③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소방청
④ 안전관리 우수업소 및 위반업소 정보공개						소방청
⑤ 화재위험평가결과 공개						소방청
⑥ 대국민용 국가화재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소방청
<b>4.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b>						
4-1.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체계 개편						
① 무과실 책임주의 보상원칙으로 전환						소방청/금융위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상향조정						소방청/금융위
4-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고도화						
③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테스트 서버 구축						소방청/금융위
④ 보험 일련번호(MU코드) 조회 시스템 개발						소방청/금융위

# 붙임 1

## 재정 투자계획

□ 총 사업비 : 195억원

(단위 : 억원)

구분	투자계획	추진예산					
		계	'19	'20	'21	'22	'23
	소계	195.4	58	115.7	9.9	5.9	5.9
1. 위험기반 제도개선	1-1. 화재위험평가 제도운영	3.5	0.7	0.7	0.7	0.7	0.7
	1-2. 기존 고시원, 산후조리원 간이S/P 설치 지원사업	96.6	48.30	48.30			
	1-3. 재난약자를 위한 맞춤형 피난도움 장치 개발(R&D)	12	4	4	4		
2. 안전관리 역량강화	2-1. 교육안전문화 확산 및 맞춤형 소방홍보	0.8		0.2	0.2	0.2	0.2
	2-2. VR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가상훈련시스템 개발(R&D)	25	5	5	5	5	5
3. 스마트 안전관리	3-1.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고도화	43.4		43.4			
	1. 개발비			35.62			
	2. 시스템SW			7.78			
	3-1. 소방민원포탈 확대 구축	14.1		14.10			
	1. 개발비			7.9			
	2. 시스템SW			6.2			

## 붙임 2

## 2·3차 안전관리 기본계획 비교

구 분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추진기간	2014~2018	2019~2023
대상현황 (기준연도)	191,378('13)	180,378('18)
안전관리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 및 재난의 효율적 예방 및 대비체계 구축</li> <li>■ 선제적 초기대응·복구체계 확립</li> </ul> <p>*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전략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li> <li>■ 국민의 생명보호 최우선</li> </ul>
중 점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의식 강화 기반 구축</li> <li>■ 관련부처별 협업체계 가동</li> <li>■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li> <li>■ 다중이용업소 안전지도 작성</li> <li>■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역량제고</li> <li>■ 안전관리 지수(Index) 개발</li> <li>■ 업종별 화재위험 등급화</li> <li>■ 다중이용업소 종합지원체계 구축</li> <li>■ 화재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성 강화</li> <li>■ 초기대응체계 구축</li> <li>■ 신속대응훈련 추진</li> <li>■ 과학적 화재저감정책 개발</li> <li>■ 화재피해복구 종합지원체계 구축</li> <li>■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성능개선</li> <li>■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정비</li> </ul> <p>(총 15개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 업종 위험평가제도 도입</li> <li>■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 강화</li> <li>■ 화재위험요인 기반의 안전시설 강화</li> <li>■ 다중이용업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강화</li> <li>■ 소방관서 대응능력 강화</li> <li>■ 안전문화 확산</li> <li>■ 소방민원정비시스템 고도화</li> <li>■ 대국민 화재안전 정보제공 확대</li> <li>■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체계 개편</li> <li>■ 화재보험 전산망 고도화</li> </ul> <p>(총 10개 과제)</p>

**붙임 3**

**다중이용업소 및 소관부처 현황**

(‘18.1.1. 기준)

업종	현황	관계법령	소관부처	시·군·구 담당부서
휴게음식점	9,547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소
일반음식점	57,114			
제과점	546			
단란주점	12,535			
유흥주점	27,470			
목욕장(찜질방)	1,803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650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472	의료법		
영화영상관	47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424			
비디오소극장	26			
복합영상물제공업	12			
게임제공업	3,15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P C 방	10,823			
복합유통게임제공	656			
노래연습장	33,3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스크린골프연습장	6,71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학원	1,8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고시원	11,892	자유업종 (관계법령 없음)	-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255			
콜라텍	541			
수면방	118			
실내사격장	11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합계	<b>180,378</b>			

**붙임 4**

**관련부처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련 추진사례**

연번	주요 추진사례	부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 연계기능 구축</li> <li>- 서울행정시스템 나이스정보시스템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li> </ul>	관련부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피난안전을 위한 시설기준 강화</li> <li>- 산후조리원 저층설치 의무화</li> <li>- 산후조리교육 내용에 안전관련 사항 추가</li> <li>- 산후조리원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의무화</li> </ul>	복지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체육시설(스크린골프연습장 등)에 금연구역 지정</li> </ul>	복지부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li> <li>▶ 산후조리원, 장애인시설 등 피난약자 거주건물에는 화재위험시설(단란주점, 위험물처리시설 등) 입점 제한</li> </ul>	국토부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업)에 대한 건축기준 마련('15.12.4)</li> <li>-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설치 금지, 지하층 설치금지 등</li> </ul>	국토부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 업종(멀티방) 제도권 편입관리('12.8.18)</li> <li>- 영화비디오법에서 복합영상물제공업 신설</li> </ul>	문체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연습장업 통로폭 기준강화(1m→1.2m이상)</li> </ul>	문체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격장 관리자 직무에 화재예방 활동 등 추가('11.1.17)</li> <li>- 사격장 금연, 화약류 수시청소, 안전교육 의무실시 등</li> </ul>	경찰청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미세먼지 기준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시 제재('18.8월 개정추진)</li> </ul>	환경부

## 붙임 5

# 최근 5년간('13~'17)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 □ 연도별 화재현황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3~'17년)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합 계	215,093	10,679	<b>211,958</b>	<b>10,480</b>	<b>3,135</b>	<b>199</b>
	100%	100%	<b>98.54%</b>	<b>98.14%</b>	<b>1.46%</b>	<b>1.86%</b>
'17년	44,178	2,197	43,571	2,174	607	23
'16년	43,413	2,024	42,621	1,957	792	67
'15년	44,435	2,093	43,884	2,058	551	35
'14년	42,135	2,181	41,549	2,154	586	27
'13년	40,932	2,184	40,333	2,137	599	47

### □ 업종별 화재현황

[단위 : 건, 명, 천원]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계	사 망	부 상	
일반음식점	1,027	64	2	62	7,203,525
휴게음식점	68	2	0	2	236,059
단란주점	195	20	3	17	1,115,992
유흥주점	447	26	5	21	2,107,493
게임제공업	129	2	1	1	265,454
노래연습장업	595	31	1	30	2,474,170
복합유통제공업	2	0	0	0	1,034
찜질방	88	5	0	5	731,950
산후조리원	8	1	0	1	12,136
학원	15	0	0	0	25,897
고시원	264	32	4	28	380,557
전화방	2	3	0	3	25,489
콜라텍	7	0	0	0	84,931
기 타	288	13	0	13	2,249,172
합계	3,135	199	16	183	16,913,859

### □ 원인별 화재현황

[단위 : 건]

합 계	실 화							자연적 요인	방 화		미 상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	가스 누출	교통 사고	부주의	기타		방화	방화 의심	
3,135	1,340	246	15	12	0	1,158	29	1	38	39	257

## 붙임 6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관련근거	내용	비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1.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란주점, 유흥주점</li> <li>•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li> <li>•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li> <li>•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li> <li>•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통보</li> </ul>	'90년대 초반 노래방 등이 전국적으로 유행
내무부예방 13810-125(1995.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첨부제 시행</li> </ul>	부산자이안트노래방화재 ('95.11.22) 서울진실노래방화재 ('95.12.4)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 (내무부고시 제1996-7호. '96.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 완비증명제 첨부대상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룸살롱, 룸카페 등</li> <li>• 피난설비, 소화설비, 영상음향차단장치, 난방시설(간접가열방식), 누전차단기, 내장재불연화, 비상구설치 및 종사자교육</li> </ul>	시행일 : 1996.3.30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9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12.13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완비증명첨부 법적 근거 마련(비디오물감상실업)</li> </ul>	시행일 : 1996.6.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1호 '96.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66㎡ 이상인 지하층 일반음식점은 영업 허가 신청 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li> </ul>	롤링스톤 락카페 화재('96.9.29)
소방법 제8조의2 ('9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법제화</li> </ul>	시행일 : 1997.9.8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97.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업의 범위 신설 〈5개업종 :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지하층 66㎡ 이상 일반음식점, 비디오물감상실업〉</li> </ul>	시행일 : 1997.9.27
소방법시행규칙제2조의2 ('97.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 완비증명을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으로 용어개정</li> </ul>	시행일 : 1997.12.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43조의2내지 제143조의4신설('98.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등 설치기준 신설</li> </ul>	시행일 : 1998.5.12
행정자치부 예방 13810-242('99.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및 장식물 사용금지 권고 등 강조지시</li> </ul>	히트노래방 화재('99.10.30)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개정 ('01.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방화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확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 100㎡ 이상(지하층66㎡), 지상1층·피난층 제외</li> <li>- 게임제공업(PC방, 오락실 등 최초 법제화)</li> </ul> </li> </ul>	시행일 : 2001.5.21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6항 신설('01.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150㎡ 이상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li> </ul>	시행일 : 2002.1.1

관련근거	내용	비고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신설 (‘02.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 신종다중이용업소(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수면방, 콜라텍 추가</li> </ul> </li> </ul>	시행일 : 2003.1.17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개정(‘02.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 및 숙박시설</li> </ul> </li> </ul>	시행일 : 2003.3.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제1호의2신설, 제26조 개정(‘03.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추가</li> <li>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지하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에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li> </ul>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호 및 제5호 개정 (‘03.2.2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포(2004.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추가</li> </ul> </li> <li>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함.</li> <li>비상구의 개념을 구체화 및 방염처리업 도입</li> </ul>	예지학원화재 (‘01.5.16)  시행일 : 2004.5.30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제정·시행(‘04.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문(비상구)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li> <li>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li> </ul>	시행일 : 2004.6.4
소방정책과-546(2004.7.16)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발코니·부속실의 크기 및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 규정</li> <li>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규정</li> </ul>	시행일 : 2004.7.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06.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조문을 별도 특별법으로 제정</li> </ul>	시행일 : 2007.3.25
시행령 제2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원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범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li> <li>-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li> </ul> </li> </ul>	시행일 : 2007.3.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 기준 규정(부속실 또는 발코니 설치)</li> <li>고시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 0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은 최소 90cm 이상</li> <li>-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 금지</li> </ul> </li> <li>고시원 영업장의 창문 설치기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 50cm이상,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창문을 바깥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1개 이상 설치</li> </ul> </li> </ul>	나우고시원화재 (‘06.7.19)  시행일 : 2007.3.25

관련근거	내용	비고
법 제9조 개정 (200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li> </ul>	시행일 : 2009.7.8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09.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원, 산후조리원에 피난유도선 설치</li> <li>• 고시원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폭 1.2m 이상</li> </ul>	시행일 : 2009.5.15
시행령 제2조 개정 (2010. 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3) :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실내권총사격장</li> <li>•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 지하층, 무창층, 실내권총사격장</li> </ul>	부산사격장화재 (‘09.11.14) 시행일 : 2010.11.12
시행규칙 제5조, 제9조 개정 (2012.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음향차단장치 자동 및 수동 설치 의무화</li> <li>• 소방안전교육의 대상, 교육시기, 교육일정 통보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li> </ul>	시행일 : 2012.2.15
법 제13조의2 개정 (2012.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의무화</li> </ul>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개정 (2012.1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보설비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추가</li> <li>•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 확대 :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li> </ul>	시행일 : 2013.2.23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3.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유지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구 : 자동유리문 설치 인정</li> <li>- 영상음향차단장치 : 실내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li> </ul> </li> </ul>	시행일 : 2013.2.23
시행령 제2조 개정 (2013.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1) :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li> <li>• 스크린골프연습장 정의 개정</li> </ul>	시행일 : 2013.11.20
법 제9조 및 제10조의2 등 개정 (201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li> <li>• 영업장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및 천장까지 구획</li> <li>• 불법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 신설 등</li> </ul>	부산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12.5.5) 시행일 : 2015.1.8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별표2의2] (201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공신고시 내부구획 재료 설계도서 표시, 고시원 등 신고업종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첨부</li> <li>• 내부구획시 배관 및 전선관 등 틈을 내화충전구조물 구획</li> <li>•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1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작성</li> </ul>	시행일 : 2015.1.8
법 제7조의2 및 제8조 (2015.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 수리전 보험 가입여부 확인</li> <li>•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 신설</li> </ul>	시행일 : ‘15.1.20 보수교육(‘16.1.21)
법 제9조, 제10조, 10조의2, 제13조의2 (2016.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권 신설(안전기준, 실내장식물, 내부구획 위반)</li> <li>• 화재배상책임보험 차등적용 근거(할인, 할증)</li> </ul>	시행일 : 2016.7.8

관련근거	내용	비고
시행규칙 제5조, 제11조, 제9조[별표2] (2016.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위승계시 교육 시기를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로 규정</li> <li>• 안전시설이 추가하지 아니한 업종변경시 완비증명서 재교부 가능(현행 강화된 기준 적용시 제외)</li> <li>•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의무화(신규, 구조변경)</li> </ul>	시행일 : 2016.10.19
법 제9조의2 신설 (2017.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경과규정 신설(기존업소 2년내)</li> </ul>	시행일 : 2017.12.26
시행규칙 제5조, 제9조[별표2] (2018.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교육 대상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구체화</li> <li>• 비상구 이격거리 기준을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비상구 중심선까지 수평거리로 계산토록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간(120cm이상) 있는 경우 부속실 나가는문 높이를 100cm이상의 창호 설치가능(외부로 열리는 창호)</li> </ul> </li> <li>•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에 공사업자 정보기입 및 세부 점검표 보험가입여부 확인토록 서식개선</li> </ul>	시행일 : 2018.3.21
시행령 제2조, 제9조[별표1의2] (2018.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 피난통로(1.2m)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별표1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 목욕장업 등에도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li> <li>- (기존) 피난통로 7개, 피난유도선 8개 업종 → (확대) 23개 쏘업종</li> </ul> </li> <li>•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확대(4종→6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기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재난약자의 피난안전 강화</li> <li>- (기존) 완강기,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 (추가)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li> </ul> </li> <li>• 다중이용업소 적용 규정 정비(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권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他 법령**의 용어 일원화</li> <li>*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li> <li>**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 정의</li> </ul> </li> </ul>	시행일 : 2018.7.10
법 제7조의2, 제16조제2항 (2018.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주 변경시 허가관청에서 변경신고 수리 전에 변경된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li> <li>•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결격사유 관련 법령정비</li> </ul>	시행일 : 2019.4.17.